

은 議事局長이 새겨 交付하고 公印臺帳에 登錄 후 議事局의 主務係長이 管理토록 하였습니다. 이상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○委員長 權會榮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.

○專門委員 鄭永國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公印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. 역시 二重의인 것을 피하고 檢討意見을 중심으로 해서 報告드리고 나머지 部分에 대해서는 書面報告로 같음하도록 하고자 합니다.

事務管理規定, 이것은 大統領令인데 第41條에 根據하여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公印條例를 制定하는 것인데 이 大統領令에서 條例로 規定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條例로 制定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 法令과 모든 것을 살펴보니가 形式, 內容上 問題點이 없는 條例案이라고 檢討되었습니다. 이상으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.

(參 照)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본 개정조례안은 199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정이유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장 직인의 규격 등 제규정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관인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나, 사무관리규정(1991. 6. 19 대통령령제13390호) 제41조에 의거 동규칙을 폐지하고, 공인조례를 제정하여 공인의규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가. 종류 및 규격
1) 교육위원회 청인 : 일변의 길이 3.6센티

미터인 정사각형

2) 의장 직인 : 일변의 길이 2.7센티미터인 정사각형

3) 의사국장 직인 : 일변의 길이 2.4센티미터인 정사각형

나. 인영

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「인」 또는 「의인」자를 붙여 새김.

다. 교부·등록 및 관리

의사국장이 새겨 교부하고 공인대장에 등록 후 의사국의 주무계장이 관리한다.

4. 근거

사무관리규정제41조 : (공인)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이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○委員長 權會榮 다음의 本 案件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안 계시니까?

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

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면 그러면 서울特別市教育監이 提出한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公印條例案에 대하여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?

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

異議 없으므로 本 案件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

(議事棒 3打)

(參 照)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(이하 "교육위원회"라 한다)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, 등록, 관리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종류) ① 공인은 교육위원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.

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